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및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함(안 제20조)
- 도서관의 운영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안 제21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며, 수탁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 수탁관리자는 다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서관 운영 위탁시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 불이행시 위탁운영 철회(안 제24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안 제25조)
-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 변경 불가(안 제26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0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서관내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독) ①시장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 하며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도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0조(시행규칙) (생략)	제2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조항변경
<신설>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시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민간위탁의 근거마련
<신설>	제21조(지원)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지원
<신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서관내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관리 운영방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23조(감독) ①시장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기관 정기 검사 조항 신설
<신설>	제24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운영 철회조건 신설
<신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도서관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조항 신설
<신설>	제26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임의 변경 금지 조항 신설



참 고 법 령



참 고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